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의견제시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법령의견제시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법령의견제시팀을 둔다.

② 법령의견제시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정부 내 법령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제9조제10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전”을 “사전·사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4.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5.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키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

· 관리

6.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의견제시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법령의견제시팀)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법령의견제시팀을 둔다.</u> <u>② 법령의견제시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u>1. 정부 내 법령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u> <u>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u> <u>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u> <u>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 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u>
제9조(법제지원국) ① ~ ⑨ (생략) ⑩ 제2항에 따른 법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	제9조(법제지원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3. 훈령·예규 등의 <u>사전</u> 검토 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 선 <u><신설></u> <u><신설></u> <u><신설></u>	--. 1. (현행과 같음) <u>1의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 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 리</u> 2. (현행과 같음) 3. ----- <u>사전·사후</u> ----- -- <u>4.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u> <u>5.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u> <u>6.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 의 관리·운영</u>
---	---